

의안번호	제호
회 연월일	2023. . . (제회)

의결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부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 규정 마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

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 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 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 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 한다.</u> <u>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 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 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6 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u> <u>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 1항 후단에 따라 제46조의3제1 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u> <u>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u>

<신 설>

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

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

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

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

명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832